

모금단체 기부금 매뉴얼



PART 1 기부금의 모집에 관한 사항 _ 1

제1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기부금의 모집	3
제2장 세법상 기부자의 세제혜택	16
제3장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24
제4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37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납세의무	38

PART 2 기부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_ 41

제1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기부금의 사용 및 관리	43
제2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 기부금의 사용 및 관리	47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기부금의 사용 및 관리	54

PART 3 기부금 사용 후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_ 73

제1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기부금의 결과보고	75
제2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 기부금의 결과보고	78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기부금의 결과보고	80
제4장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공개	92

본 매뉴얼상의 주요 용어 정리

사회복지법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 지자체 또는 민간으로부터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금액,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기부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이 기부금을 모집하고, 사용 및 관리하고, 관련 주무관청에 결과를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법령 및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준수해야 할 법령 및 규칙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 “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으며, 본 서에서는 해당 법령 및 규칙이 기부금의 모집단계 → 기부금의 사용 및 관리단계 → 주무관청에의 결과보고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각각의 법령 및 규칙에서는 “반대급부 없이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후원(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기부(법인세법, 소득세법)”, “출연(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후원, 기부, 출연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에 대하여 “기부금품(기부금품법)”, “기부금(법인세법, 소득세법)”, “후원금(재무·회계 규칙)”, “출연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 해당 용어들의 의미는 모두 유사하므로 본 서에서는 편의상 “반대급부 없이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 “기부를 통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은 “기부금”으로 통일하여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법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상증세법”으로 통일하여 칭하기로 합니다.

이하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기부금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법령 및 규칙상의 절차와 각종 의무사항에 대하여 Q&A의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금 단 체
기 부 금
매 뉴 얼

PART 1

기부금의 모집

제1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기부금의 모집

제2장 기부자의 세제혜택

제3장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제4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납세의무

제 1 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기부금의 모집

QUESTION 사회복지법인이 기부받은 기부금은 모두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되나요?

기부금품법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부금 모집을 통해 기부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기부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기부금품법 제2조 제2호). 기부금품법은 이러한 모집행위에 의해 기부를 받는 경우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집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1천만원 미만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나 기부자에게 기부권유 등의 모집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경우에는 모집등록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으므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에 따라 기부받은 기부금은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이 기부금의 모집을 통해 기부받은 기부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다음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의 모집에 대해서도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기부금품법 제3조).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Q^{uestion} 회원들로부터 회비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부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므로 기부금품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에 제외됩니다(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따라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부금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uestion} 기부자의 자발적인 기탁에 따른 기부금은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다른 법령이나 규칙(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세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나 세법에서는 “모집에 의한 기부금”과 “자발적인 기탁에 따른 기부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기부금”으로만 모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에 의한 기부금”과 “자발적인 기탁에 따른 기부금”은 구분 없이 모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나 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기부금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규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용되는 법령 및 규칙
모집에 의한 기부금	- 기부금품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세법
자발적인 기탁에 따른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세법

Q^{uestion} 저희 사회복지법인이 기부금 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기부금 모집이 가능한 단체나 사업을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부금품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기부금 모집이 가능합니다.

-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
-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을 한다면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의 모집이 가능할 것입니다.

Question **기부금 모집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필요한가요?**

기부금 모집을 위해서는 기부금 모집등록이라는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부금 모집 금액이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인 사회복지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기부금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시행령 제2조).

등록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시행령 제3조).

- ①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신청서(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②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 ③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 ④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 ⑤ 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⑥ 기부금품 모집목적이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아목의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라면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
- ⑦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예금통장 사본

기부금품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서식인 별지 제1호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Q^{uestion}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기부금 모집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모집등록 시 모집금액은 각각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집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 “모집금액”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법제처 15-0285, 2015.6.4, 행정자치부).

Q^{uestion} 기부금 모집등록 시 추가적으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기부금 모집등록 시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기부금품법 제4조 제3항). 만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모집등록을 한 경우 등록청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말소 시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10조 제1항 제4호).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기부금 모집등록 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 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앞서 설명한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 모집등록을 하고 기부금을 모집한자는 등록청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당하여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기부금품법 제10조 제1항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

Q^{uestion} 기부금 모집등록이 완료되어 모집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모집활동 수행 시 모집자인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해야 할 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모집자인 사회복지법인은 기부모집금출납부(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5호서식)와 기부모집물품출납부(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6호서식)를 모집장소에 갖추고 기부금의 접수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기부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기부모집금출납부 및 기부모집물품출납부는 다음과 같으며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한 내용은 “제3장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기부모집금 출납부

연월일	수입			지출			잔고
	기부자 주소·성명	금액	누계	지출내용	금액	누계	

Q^{uestion} 기부금의 모집 중 모집기간의 연장, 모집금액의 증액 등의 등록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요?

기부금의 모집 중 모집등록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모집등록 시 등록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기부금의 모집 시 추가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기부금의 모집은 기본적으로 모집등록 시 등록청에 제출한 모집·사용계획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기부금 모집자인 사회복지법인은 기부자에게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기부금품법 제6조 제1항), 또한, 기부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며(기부금품법 제6조 제2항),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7조).

이러한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존재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구분	불이익	관련 규정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모집한 경우	- 등록말소에 따른 기부금 반환	기부금품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한 경우	- 등록말소에 따른 기부금 반환 -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부금품법 제10조 제1항 제5호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접수한 경우	- 등록말소에 따른 기부금 반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부금품법 제10조 제1항 제6호 기부금품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부금품법 제18조 제1항 제1호

Q^{uestion} **기부금의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모집된 기부금을 사용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된 금액이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8호)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모집한 기부금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모집한 기부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제처 14-0030, 2014.2.27, 안전행정부).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할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1. 모집자
2. 모집목적
3. 모집등록기간
4. 모집등록금액
5.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 가.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고
합계		※ 모집등록금액 대비 %

나. 물품 : 점(원 상당)

6. 모집금품의 금융기관 예치명세(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 : 별첨)

금융기관별	금액(원)	계좌번호	예금주
합계			

첨부 :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 각 1부

년 월 일

모집자의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

귀하

또한, 기부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 기부금의 사용명세

만약, 상기의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모집등록 말소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기부금품법 제10조 제1항 제10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6의2).

제2장

세법상 기부자의 세제혜택

Q QUESTION 기부금 모집 시 기부자에게 기부에 따른 세제혜택의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기부자가 얻게 되는 세제혜택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기부자는 기부를 하고 수령하게 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근거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한 개인기부자의 경우 소득세 세액공제의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법인기부자의 경우 법인세 산정 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와 법정기부금 단체(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기부한 기부금만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입니다. 세법상 지정기부금이란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을 의미하고, 법정기부금이란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법에서 말하는 비지정기부금이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부금을 의미합니다(세법상의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은 기부금 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을 의미하는 지정기부금이나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을 의미하는 비지정기부금과는 다소 의미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금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기부금 단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기부금 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 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화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행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 3)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마.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 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 나. 제1항제1(호사목)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제기부법 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 4. 삭제 (2010.2.18)
-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 내용은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로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바.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Q **question** **기부자가 세법상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세제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기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및 기부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인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여부에 따라 기부자가 얻게 되는 세제혜택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자	기부금 단체	세제혜택
개인 (사업소득만 있는 자)	법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적용 (1) 필요경비 산입한도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1) - 이월결손금] × 100% (2)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5년 이월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적용 (1) 필요경비 산입한도 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1) -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10% + min([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1) -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30% (2)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5년 이월공제 가능
개인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는 자)	법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1) 세액공제금액 : [기부금-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15%(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2) 기부금 한도 : 종합소득금액(*2) (3)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5년 이월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1) 세액공제금액 : [기부금-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15%(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2) 기부금 한도 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 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 30% (3)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5년 이월공제 가능
법인	법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손금산입 적용 (1) 손금산입 한도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3) - 이월결손금] × 50% (2)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5년 이월공제 가능

기부자	기부금 단체	세제혜택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손금산입 적용 (1) 손금산입 한도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2)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5년 이월공제 가능
개인 및 법인	비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및 기부금 손금(필요경비)산입 적용되지 않음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2) 종합소득금액 :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차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

(*3)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Q^{uestion}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은 앞서 설명한 세법에서 정하는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나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세법에서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기부자는 앞서 설명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장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QUESTION 사회복지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한 자가 기부금공제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증빙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제3호의3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기부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과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은 동일한 서식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기부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4 제2항).

QUESTION 사회복지법인이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다음의 두 가지를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1.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 및 제출의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명세를 말합니다.

- ①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와 본점 등의 소재지)
- ② 기부금액
- ③ 기부금 기부일자
-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일자
- ⑤ 그 밖의 사항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제출의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12월 31일에 끝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6월 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 question 기부자별 발급명세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는 의무” 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의무” 는 보관, 제출의무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이고, “기부자별 발급명세” 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이 5년간 보관을 하면 됩니다.

다만, “기부자별 발급명세” 의 경우에도 보관하고 있는 중에 국제청장, 지방국제청장, 관할세무서장이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Q question 기부금 영수증, 기부자별 발급명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발급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현재까지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이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와 관련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기부금을 받은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혹은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때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이란 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이를 말하고, 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급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하는 금액과의 차이를 말합니다.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으로 가 이외의 경우 :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2%

2.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Q **question** 기부금을 금전이 아닌 현물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의 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현물로 기부를 받은 경우 기부금의 가액은 기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의 여부 및 기부금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인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자	기부금단체	기부금 가액	관련조문
개인	법정기부금 단체	기부한 사업자의 장부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한 때의 시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법인	법정기부금 단체	기부한 법인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한 법인의 장부가액 ^{*)}	

^{*)}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시가

Q^{uestion} 현물로 기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해당 기부금품을 법인의 장부에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의 경우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부한 자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법인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의3).

다만, 개인 기부자가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기부한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기부받은 법인의 취득원가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부자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 개인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현물 기부한 경우 취득가액과 기부금영수증 가액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현물을 기부받은 경우, 세법에 따를 경우 기부받은 공익법인이 장부에 기록하는 취득가액과 개인에게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가액이 다를 수 있어 혼란이 될 수 있다. 즉, 법인세법에 따를 경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현물로 기부를 받은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 그 현물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개인이 장부에 계상한 금액으로 하거나 장부가액이 없는 개인의 경우에는 기부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은 개인이 기부한 기부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은 현물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이나 기부한 개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반면 기부한 개인은 현물의 시가를 기부가액으로 해야하는 다소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법의 명확한 해석이나 규정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Q **uestion** **기부금 영수증, 기부자별 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주세요.**

아래의 사례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 기부자별 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사회복지법인 AA는 2016년에 다음과 같이 기부를 받았다.

기부자	기부날짜	기부금품
홍길동	2016.3.1	현금 300,000원
(주)한국	2016.4.1	현금 2,000,000
홍길동	2016.5.1	쌀 50kg (500,000 상당)
(주)한국	2016.6.1	프린터기 5대(1,000,000상당)

- 홍길동씨의 인적사항
 - 1) 주소 : 서울 중구 통일로
 - 2) 주민등록번호 : 600405-*****
- (주)한국의 인적사항
 - 1) 주소 : 서울 종로구 명동대로
 - 2) 사업자등록번호 : 108-05-*****
- 사회복지법인 AA의 인적사항
 - 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소천로
 - 2) 고유번호 : 104-82-*****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양식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양식은 동일합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코드는 40을 기재합니다. 위의 사례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기부자별발급명세,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14.3.14>

일련번호	2016-1	기 부 금 영 수 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600405-*****				
주소(소재지)	서울 중구 통일로						
② 기부금 단체							
단체명	사회복지법인 AA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104-82-*****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소천로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④ 기부내용							
유형	코드	구분	연월일	내용			금액
				품명	수량	단가	
지정	40	금전	2016.3.1				300,000
지정	40	현물	2016.5.1	쌀	50kg	10,000/kg	500,000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2016년 5월 1일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기부금 수령인

2016년 5월 1일
사회복지법인 AA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②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④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 ④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13.2.23.>

기부금 영수증

일련번호	2016-2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한국	주민등록번호	108-05-*****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서울 종로구 명동대로		

②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회복지법인 AA	사업자등록번호	104-82-*****
		(고유번호)	
소 재 지	경기도 이천시 소천로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③ 기부금 모집처(연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④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지정	40	금전	2016.4.1				2,000,000
지정	40	현물	2016.6.1	프린터	5	200,000	1,000,000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일

신청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6월 1일

기부금 수령인

사회복지법인 AA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②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③ 기부금 모집처(연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④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 ④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개정 2012.2.28.)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사업연도 (과세기간)	2016. 1. 1 ~ 2016. 12. 31
----------------	------------------------------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	① 단 체 명	사회복지법인 AA	② 대 표 자	이 오 오
	③ 사업자등록번호 (고유 번호)	104-82-*****	④ 전화번호	051-123-1234
	⑤ 소 재 지	경기도 이천시 소천로		
	⑥ 유 형 (해당란에 √)	<input type="checkbox"/> 정부등 공공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종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자선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문화 <input type="checkbox"/> 학술 <input type="checkbox"/>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⑫ 기부자	⑦ 구 분		⑧ 합 계		⑨ 법정기부금		⑩ 특례기부금		⑪ 지정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 인	2	3,000,000							2	3,000,000
개 인	2	800,000							2	800,000

2017년 6월 25일

제출인

사회복지법인 AA (서명 또는 인)

이천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⑥ 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⑪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Question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출방법을 알려주세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아래의 화면에서 신고/납부 클릭



공지사항 [\[더보기\]](#)

• 2016년 1사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주묻는 상담사례 [\[더보기\]](#)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주요 문의사항 안내

더욱 새로워진

홈택스 이용안내 [▶](#)

상담시간

noon ~ 18:00

세비나 [한번더](#) [21](#)



3) 직접작성제출 클릭

HomeTax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재보

신고/납부 일반신고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Step 1. 일반신고 Step 2. 제출내역

- STEP 1. 일반신고 작성 및 제출 단계입니다.
- 제출기간이 있는 과세자료로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된 내용만 정당하게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자료 제출 후 접수증의 접수결과(정상)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증 및 과세자료제출 요약정보는 [STEP 2.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도움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직접작성제출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작성 방법

- 분점 외 지정법인도 제출가능(2011년 5월 종료법인, 2011년 부터 적용)
- 이 서식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6)유형란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 (8)-(11)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입력합니다.

· 작성 시 제출할 서류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별지 제 75호의 3서식]

제 4 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Q^{uestion} 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시설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기부금 수령을 위한 별도의 계좌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일반 예산운영을 위한 계좌에 기부금을 수령해도 상관없나요?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제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로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후원금전용계좌등)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

※ 2012년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1)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모금절차 미비

후원자에게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분리 사실을 알려 후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법인인지 산하 시설인지를 분명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내용이 없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

- 법인회계 위주로 모금이 발생함.

2) 조치사항

사회복지법인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때 복지법인의 회계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로 분리되어 있음을 알리고, 후원서 작성시 법인과 시설 중 어느 곳에 기부하는지 명시하도록 함.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납세의무

QUESTION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법인은 세법 상 납세의무가 존재하나요?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수증 받은 재산(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출연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바로 과세가 된다면 목적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금액에 상당부분 제약이 가해지므로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즉,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이 출연 받은 기부금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기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 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기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QUESTION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의 범위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언급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른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법인은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령하는 기부금은 공익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상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 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Q **question** **저희 사회복지법인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회비의 사전적 의미는 “모임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그 모임의 구성원에게 걷는 돈”을 의미합니다. 즉, 회비는 단체의 소속회원들이 회원의 의무로서 자신이 속한 단체의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비는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일반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부회원으로 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특별회비, 찬조금 등)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서면4팀-1274, 2008.5.26.).

다만, 회비인지 기부금인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회비’라는 명목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들어오는 모든 금품이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회비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회비인지 아니면 기부금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Question **사회복지법인**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증세법은 공익법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이라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출연 받은 기부금이 공익사업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후관리 및 의무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익법인이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위반시점에서 상속세 혹은 증여세가 추정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역시 기부금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상증세법에 따른 상속세나 증여세 혹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관리 및 의무기준은 본서의 “Part II 기부금의 사용 및 관리” 와 “Part III 기부금 사용 후 결과보고” 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 금 단 체
기 부 금
매 뉴 얼

PART 2

기부금의 사용 및 관리

제1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기부금의 사용 및 관리

제2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상

기부금의 사용 및 관리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기부금의 사용 및 관리

제 1 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기부금의 사용 및 관리

Q QUESTION 사회복지법인이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점에 주의하여야 하나요?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완료된 기부금은 등록신청 시 제출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기부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은 기부모집금출납부(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5호서식)와 기부모집물품출납부(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법 제12조 제1항).

- ① 기부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모집된 기부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만약, 기부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말소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 있으며(기부금품법 제10조 제1항 제8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5호).

Q^{uestion} 모집한 기부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청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 기부금의 모집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② 모집된 기부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청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기부금의 사용을 마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등록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7조).

등록청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

1. 모집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2. 모집금품 총량: 원 또는 점(환산액 원)

위 명세 모집예정 총량

모집 과부족량

3. 처분 및 사용하려는 이유:
4. 처분 및 사용하려는 방법:
(등록 당시의 방법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5. 처분 및 사용일시와 장소:

위와 같이 처분 및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모집자의 주소

성명 (인)

귀하

Q^{uestion} 모집된 기부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등록청에 보고하거나 일반인에게 공개해야하는 의무는 없나요?

모집된 기부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Q^{uestion} 모집된 기부금 중 일부를 모집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모집비용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모집된 기부금의 100분의 150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의 일부를 기부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집비용 총당비율(제18조 관련)

모집금액	적용비율	비고
1. 1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5% 이하	
2.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3% 이하	
3.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2% 이하	
4. 200억원 초과	모집금액의 10% 이하	

Q^{uestion} 기부금품법에서 정한 모집비용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비용 총당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부금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제2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상 기부금의 사용 및 관리

Q^{uestion} 재무·회계 규칙에도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만일 있다면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 2(41조의 2부터 41조의 7까지)에는 후원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Part 1 제2장 기부자의 세제혜택”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금품은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를 하는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세법에서 사용하는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기부금 단체에서 사용하는 지정기부금이나 비지정기부금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할 때, 지정기부금은 기부금 사용용도가 정해진 기부금을 의미하고, 비지정기부금은 사용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기부금을 의미하지만, 세법상 지정기부금이란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되는 기부금으로 기부금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을 의미하고, 비지정기부금이란 지정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 기부금공제 대상이 아닌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Q^{uestion} 기부금을 통장으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습니. 별도의 처리 없이 현금을 사용하면 되나요?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은 반드시 후원금전용계좌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기부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반드시 후원금전용계좌에 입금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후원금전용계좌는 반드시 다른

계좌와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즉, 다른 용도의 통장을 후원금전용계좌로 함께 사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후원금만을 따로 관리하는 전용계좌이어야 합니다(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4 제2항).

Q^{uestion}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기부금과 관련하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사회복지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4~6)

- 1)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 2)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 3)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Part III 기부금 사용 후 결과보고에서 상술)
- 4)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Part III 기부금 사용 후 결과보고에서 상술)

Q^{uestion} 후원금 발급 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기부금을 받은 때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아래와 같은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예시)〉

연번	일시	후원자(법인)	후원금유형 및 금액		지정후원금 용도	비고
			지정	비지정		
1	2016.1.25	000법인	500,000원		아동급식지원	
2	2016.1.30	000		100,000원		

Q^{uestion} 기부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재무·회계 규칙 상 기부금 사용과 관련한 일반 원칙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은 기부금을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기부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7 제1항 및 제2항).

QUESTION 기부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기부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기부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때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해당연도 기부금 수입금액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해당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간접비 50% 사용예시

2016년도 말 기준, 비지정기부금 모집액 1,000천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금액 한도는?

※ 비지정기부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6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기부금 300천원은 2017년도 세입예산과목 중 전년도이월금(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 * 업무추진비 중 기부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②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 * 재산조성비 사용 기준 :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비지정기부금사용 (종전 : 토지·건물 구입성격의 비용 집행 금지)
- ③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기부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 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기부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
- ※ 종사자 처우 관련 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경우 기존대로 지급
- ※ 분기별 정산 원칙으로, 전(前)분기에서 수령한 비지정 기부금의 50% 이내에서 현(現)분기에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며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사례 예시

〈인건비 사례예시〉

-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상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기존대로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되, 비지정 기부금으로 추가 지급 불가
-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하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공무원 사회복지업무수당과의 차액만큼 비지정 기부금으로 추가 지급 가능
- 사회복지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경우
- 비지정 기부금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Q **question** 비지정기부금의 사용가능 여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운영비별로 구분해 주세요.

1)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운영비 구분

과목		직접비	간접비	비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 급여 - 제수당 - 일용직급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 기타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기부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사용불가(다만, 15% 이내에서 기부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 공공요금 - 차량비	- 기타운영비	

과목		직접비	간접비	비고
		- 여비 - 수송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재산 조성비	시설비	-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운영비	- 생계비 - 수용기관경비 - 피복비 - 의료비 - 장의비 - 직업재활비 - 자활사업비 - 특별급식비 - 연료비		
	교육비	- 수업료 - 학용품비 - 도서구입비 - 교통비 - 급식비 - 학습지원비 - 수학여행비 - 교복비 - 이미용비 - 기타 교육비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 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 반환금	사용불가
적립금	운영충당 적립금			사용불가
준비금	환경개선 준비금			사용불가

2) 비지정기부금 사용을 위한 법인운영비 구분

과목		직접비	간접비	비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 제수당 - 일용잡급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 기타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사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기부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사용불가(다만, 15% 이내에서 기부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 차량비 - 연료비 - 여비 - 수송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장비유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비 -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일반사업비	- OO사업비		단, 수익사업 사업비로는 사용불가
전출금	전출금	- OO시설 전출금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금상환금 - 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 - 반환금 	사용불가

※ 기부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기금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에 기부된 기부금을 시설의 전출금으로 줄 수 있나요?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법인이 기부금을 타 회계로 전출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무·회계 규칙의 별표에 따르면 법인이 기부금을 시설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하는 법인은 물론 이를 전입하는 시설 역시 이를 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기부금의 용도에 맞게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해 이월하는 경우에도 이월되는 기부금을 다른 이월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재무·회계 규칙의 별표에 명시된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중 기부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1] 법인회계 세입예산 과목구분 중

관		과 목		내역		
		항	목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812	전년도이월금(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별표2]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 중

관		과 목		내역		
		항	목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00시설전출금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412	00시설전출금(후원금)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별표3] 시설회계 세입예산 과목구분 중

관		과 목		내역		
		항	목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812	법인전입금(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이월금(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기부금의 사용 및 관리

Q **QUESTION** 상속세법 상 공익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기부받은 기부금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지켜야 할 규정이 있나요?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은 기부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받는 대신 해당 기부금을 사용·관리함에 있어 상증세법 상 사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증세법에서 기부받은 기부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기간, 사용목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추징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상 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출연재산, 매각대금, 운용소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상증세법상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증여세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기부금은 기부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①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② 기부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③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참고로, 사회복지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불인정하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이하의 금액(상증, 재산세과-231 , 2012.06.14.)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상증, 재산세과-231 , 2012.06.14.)
-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상증, 재산세과-231 , 2012.06.14.)
- 공익법인 등이 수선비, 전기료,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상증, 재산세과-231 , 2012.06.14.)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의 그 비용(상증, 재산세과-231 , 2012.06.14.)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상증, 서면인턴넷방문상담4팀-1901 , 2004.11.24.)
-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황에 사용한 경우(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527 [상속증여세과-00493] , 2016.05.09.)
- 해외 현지출장에 따른 경비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상증, 상속증여세과-543 , 2013.09.03.)
-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서면4팀 -1135, 2005.07.05.)

●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금액
- 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으로 고용인이 거주할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출연 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상증, 재삼46014-702 , 1995.03.21.)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상증, 재산세과-428 , 2009.10.09.)
- 공익법인 등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음(서일46014-10258, 2002.02.28.)

기부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기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였거나 미사용된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 +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미사용 또는 미달 사용한 재산의 가액

2. 기부받은 기부금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

여기서 “매각대금”이란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재산에 한함)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기부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①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②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또한,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용비율	미달사용하는 경우
1년 이내	3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부과
2년 이내	6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부과
3년 이내	90%	미달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증여세 부과

3. 기부받은 기부금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말하므로(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이 기간내에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의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

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기부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른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2).

$$\text{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 \text{기부받은 재산(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액} \times \frac{\text{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text{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또한, 기부받은 재산의 운용소득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70%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참고로 “운용소득”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 기부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 기부받은 재산의 매각금액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익에 산입된 금액
- (+) 기부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
- (-)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 (+)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 미달금액에 대한 가산세

Q^{uestion} 저희 법인은 당기에 1) 기부받은 재산도 존재하고, 2) 기부받은 재산을 매각한 금액도 존재하며, 3) 기부받은 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도 존재합니다. 당기에 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이 세 가지 소득 중 어떠한 소득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따라야 할 것이나, 재원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부재산 운용소득, 기부재산 매각금액, 기부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상증세법 기본통칙 48-38...4 제4항).

Q^{uestion} 저희 사회복지법인은 주식을 기부받았습니다.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이 주식은 기부받은 경우에 지켜야 할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상증세법에서는 1) 기부받은 주식이 법에서 정한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와 2)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주식가액의 비율이 법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증여세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받은 주식이 아래에서 서술할 상증세법 상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주식을 기부받고, 보유함에 있어 상증세법 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1. 기부받은 주식이 법에서 정한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기부받은 경우로서 기부일 현재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이때, 5%(1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공익법인이 기부일 현재 기부받은 주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주식을 모두 합하여 5%(10%)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① 기부일 현재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주식
- ② 기부자가 기부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 ③ 기부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외의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 ④ 기부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기부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지분비율을 초과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의 기부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기부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기부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기부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기부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기부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참고로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특수관계인” 과 “성실공익법인”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각호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옹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옹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1. 외부감사의 이행
2.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3. 결산서류등의 공시
4. 장부의 작성·비치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1.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3. 제3호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2.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주식가액의 비율이 법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 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상증세법 제48조 제9항 및 제78조 제7항).

여기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기부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을 말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기부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다만, 성실공익법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은 상기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부받은 기부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증세법 상 불이익이 존재하나요?

기부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하는 주식 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의 기부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기부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Q^{uestion} 그 밖에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은 앞서 언급한 규정 외에도 다음의 의무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증여세 추징 또는 가산세 부과와 세법 상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1.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부자는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기부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봅니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

여기서 “기부자” 및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자의 범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기부자”란 재산기부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자를 말한다.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의 범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 이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을 말한다.

가산세 적용 시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다만,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기부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2.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위하여 광고·홍보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상증세법 제48조 제10항).

여기서 말하는 “광고·홍보”는 ①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 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② 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5항), 해당 광고·홍보행위 시 지출된 광고·홍보매체의 이용비용 및 행사비용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상증세법 제78조 제8항).

3. 공익법인은 기부받은 기부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때에는 해당 기부받은 재산가액을, 통상적인 지급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다만,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1. 기부받은 재산을 기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기부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기부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공익법인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4.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이 특정계층에게만 그 혜택이 제공되어서는 안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 시 또는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익법인이 공익사업 수혜자를 한정하는 것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5. 공익법인은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켜야합니다.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잔여재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

다만, 잔여재산 중 일부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시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9항).

- 1. 공익법인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부받은 재산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기부자 및 그 친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
- 2. 기부받은 재산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6. 공익법인은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기부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또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상증세법 제51조).

여기서 “장부”는 기부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종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다만, 이종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었거나,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봅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한편,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는 상증세법에 따라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로 보며,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합니다(상증세법 제51조 제3항).

만약, 상기의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기부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100만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합니다(상증세법 제78조 제5항).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기부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기부받은 공익법인등(기부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기부한 기부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기부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기부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

7. 직전사업연도 혹은 과세기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50조 제3항).

1.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및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현재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 + 출연 재산가액) × 0.07%” 의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세법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8. 공익법인은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제외)은 해당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상증세법 제50조의 2 제1항). 전용계좌는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및 제3항).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 ② 수수료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③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④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기부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기부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지급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전용계좌를 사용해야하는 상기 거래 외의 경우에는 그 거래일자, 거래상 대방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9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7항).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08.4.30.>

(1쪽)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1)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							
거래처별·월별 내역(대금을 지급받은 거래)							
(단위 : 천원)							
⑥ 일련 번호	⑦ 거래 일자	공 급 받 는 자				⑫ 거래금액	⑬ 비고
		⑧ 상호	⑨ 성명	⑩ 사업장	⑪ 사업자등록번호		
계							
<p>※ 작성방법</p> <p>1.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에 그 내역을 작성하는 서식입니다.</p> <p>2. 본 서식은 본점법인에서 일괄작성(각 지점분 포함)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3.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 등(⑧란부터 ⑪란까지)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해당 공익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사유 발생일부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계좌를 사용해야하는 거래에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상증세법 제 78조 제10항).

- ①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 ② 전용계좌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모 금 단 체
기 부 금
매 뉴 얼

PART 3

기부금 사용 후 결과보고

제1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기부금의 결과보고

제2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상 기부금의 결과보고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기부금의 결과보고

제4장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공개

제 1 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기부금의 결과보고

Q^{uestion} 모집한 기부금을 사용완료 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취해야 하나요?

모집한 기부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 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모집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1. 모집자
2. 모집목적
3. 모집등록기간
4. 모집등록금액
5.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가.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고
합계		※ 모집등록금액 대비 %

나. 물품 : 점(원 상당)

6. 모집금품의 사용명세(영수증 등은 자체보관)

사용명세별	금액(원)	사용방법	비고
합계			
모집비용		(사용명세 별첨)	모집금액의 %

※ 모집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는 자체 보관

※ 물품 점(원 상당) : ○○에 기증

7.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일자)

- 첨부 : 1.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일자) 1부
 2. 회계감사보고서 1부(해당되는 경우)

년 월 일

모집자의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

귀하

Q^{uestion} 모집한 기부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등록청의 승인을 얻어 모집 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모집한 기부금을 모집목적에 사용하면 해당 사용에 대해서 모집 및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남은 잔액에 대하여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잔액 부분에 대하여도 그 사용을 끝낸 때에 모집자는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제처 14-0102, 2014.6.17, 안전행정부).

Q^{uestion} 모든 모집인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회계감사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모든 모집인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 모집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기부금 모집 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때는 기부금의 사용을 끝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Q^{uestion} 기부금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7호).

제2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상 기부금의 결과보고

Q^{uestion} 기부금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상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해야 할 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법인은 기부금 사용을 완료 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와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는 기부를 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통보하는 것이며,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부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Q^{uestion}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통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은 연 1회 이상 해당 기부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기부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가 가능하며 기부자 각각에게 개별통보도 가능합니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5).

Q^{uestion}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반드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력한 보고서도 추가 제출 가능)(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사회복지법인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 제2항).

다만, 기부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않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게시하는 경우, 시·군·구, 법인 및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 제3항).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를 안하거나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기부금에 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부금에 관한 영수증(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앞서 “Part I 제3장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세법상 불이익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기부금의 결과보고

Q QUESTION 저희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연도가 종료되고 결산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기부받은 기부금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결과보고를 하는 등 상증세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상증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기부자로부터 기부받은 기부금이 공익목적에 사용되었는지 및 공익법인이 상증세법 상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적정하게 준수하였는지의 결과를 과세관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결과보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공익법인에게는 가산세의 부과 등 세법 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바, 본 장에서는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결과보고 의무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고서 등의 제출의무

재산을 기부받은 공익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 및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에 관한 서류” 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공익법인이 상기의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에 관한 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합니다(상증세법 제78조 제3항).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할 “결산에 관한 서류” 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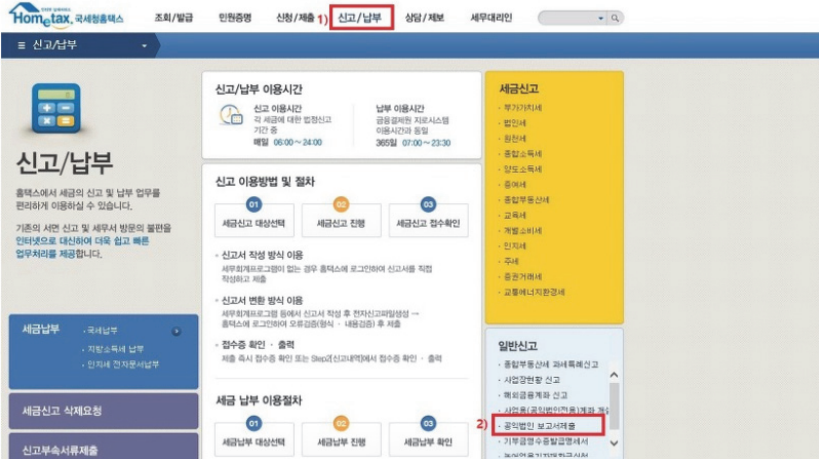
(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에 한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에 관한 서류”는 ①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②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③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④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에 관한 다음의 서식을 말하는 것입니다(부록1참조).

1.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3.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4.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5.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의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6.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7.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이사등선임명세서
8.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한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상기의 서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이하에서는 및 전자제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에 관한 서류”의 전자제출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클릭



② 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 클릭



③ 공익법인의 기본정보 입력

- 01. 기본정보 입력
- 02.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
- 03.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 04.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05.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06.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07.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 08. 이사 등 선임명세서
- 09. 이사 등 선임명세서 기준초과 경비명세서
- 10. 특정기입광고 등 명세서
- 11. 세무확인서
- 12. 신고자료 제출
- 13. 종료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마리보기]

● 기본정보 입력

· 이월의 전자신고대상 공익법인의 사업연도는 2015/06 ~ 2016/05 입니다. 이후 사업연도는 입력은 가능하지만 제출은 해당기간에 가능합니다.
(기한후 제출은 결산연도 제출기한 기준으로 1년까지이며 그 이후부터는 서면제출만 가능합니다.)
예) 201512월말 발인은 2017년 2월까지 홈텍스 제출가능

● 사업자 [새로 작성하기] [신고서 불러오기]

결산년월 년 월

· (2) 사업자등록번호 - - [확인] ×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 세부사항

· (1) 상호(공익법인명)

· (3) 성명(대표자)

· (4)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 소재지

주소검색

도로명 주소

지번주소

건물명(아파트,상가) 동 층 호

· (7) 전화번호 - -

· (6) 전자우편주소 @ 직접입력

· (8) 공익사업유형 교육 학술, 갈학, 자선 사회복지 의료 종교 문화 기타


④ 왼쪽 메뉴의 순서에 따라 관련된 서식을 순서대로 작성

- 02.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
- 03.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 04.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05.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06.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07.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 08. 이사 등 선임명세서
- 09. 이사 등 선임명세서 기준초과 경비명세서
- 10. 특정기입광고 등 명세서
- 11. 세무확인서
- 12. 신고자료 제출
- 13. 종료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및 사용명세서,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이 완료되지 않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내역(해당 사용연도 사용분)을 작성하여, 출연재산별로 출연일이 빠른 순서로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2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출연받은 재산사용명세 역설문서 서식불러오기



1.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입력합니다.

[작성]



2.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역설문서로 작성한 명세서 파일을 불러옵니다.

[역설 불러오기]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 입력방법 안내>

- 『작성』 방법
 -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내역을 직접 입력합니다.
 - [작성]으로 입력한 경우 [역설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택내역삭제] 버튼으로 모든 자료를 삭제하면 [역설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역설 불러오기』 방법
 - [역설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역설문서로 작성한 출연받은재산(3도지, 4건물)을 제외한 파일을 선택하여 오류검증을 거치고 (3도지, 4건물)은 직접입력방식으로 입력합니다.

⑤ 서식 작성이 완료되면 전자제출 후 신고서 제출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

신고서 제출 접수증

사용자 ID		사용자명		접수일시	2016-03-28 11:12:10
접수결과	정상	접수번호	318-2016-2-		
· 제출내용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314-82-		
과세년월	2015-01		신고구분	첨기신고	
신고서종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첨부한서류	6	

위와 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 * 주의 : 접수증에 표시된 금액이 실제 신고하고자 하는 금액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세무서 전자신고 창구에서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납세자인 귀하에게 있으니 최종신고서 작성내용을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신고기간내에 다시 신고(신고내용의 변경 유무에 상관 없음)하는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결산서류 공시의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기부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상증세법 제50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1항).

다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기부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상증세법 제50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만약,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상증세법 제50조의 3 제2항),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상증세법 제78조 제11항).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은 자율적으로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할 수 있는바(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4항),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여부에 따라 공익법인이 공시해야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록2 참조).

●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 공시해야 할 서식

- ①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② 공익법인등의 결산세(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 ③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인 경우 감사보고서
- ④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1)
- ⑤ 주식 등의 출원·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2)
- ⑥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3)
- ⑦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4)

●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의 공시서식

- ①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 2 서식)

1) 결산서류 전자공시 방법

-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의 “공익법인공시” 클릭



- ② 공시/공개 등록하기에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클릭



③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의무공시 결산서류 작성하기” 클릭

☰ 공익법인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Step 1. 결산서류 등 등록 Step 2. 제출내역

· [STEP 1. 결산서류 등 등록]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등록 단계입니다.
 · 해당 공시기한 내 여러 번 공시를 하는 경우 최종 최종 내용만 정당하게 공시된 것으로 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 후 접수증의 접수결과(정상)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증 및 공시요약정보는 [STEP 2.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등록 도움말

공익법인 결산서류(공익법인의 기본사항, 고유목적사업 현황, 기부금 모금 및 지출명세, 재무제표 등) 공시를 위한 등록

● **의무공시** 의무공시 결산서류 작성하기

● **자율공시** 자율공시 결산서류 작성하기 문의처 >

⑤ 모든 서식 작성하여 제출한 후 공시 접수증 출력 후 보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접수증



· 접수내용

사용자ID	*****	사용자명	*****
접수번호	206-2016-2-*****	접수일시	2016-04-28 20:56:16
접수결과	정상		

· 제출내용

(단위: 원)

서식명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의무공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제출년월	2016-04
사업년도	2015-01-01 ~ 2015-12-31	공익사업유형	*****
결산서류 공시 구비서류 건수	8종(보고서 포함)	감사보고서 건수	1건
총자산가액	***** 원	총수입금액	***** 원
재공시 사유			

위와 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기부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상증세법 제50조 제1항), 세무확인을 받은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해당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다만, 다음의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 가액(부동산의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기부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
3.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기부받은 공익법인등(기부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기부한 기부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기부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기부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

*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세법이 개정될 예정임

만약,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기부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100만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합니다(상증세법 제78조 제5항).

외부전문가가 작성해야 할 세무확인서식(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은 다음과 같으며(부록3 참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전자제출 할 때 함께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집계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부표1)
출연자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제 제32호 부표2)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제 제32호 부표3)
재산의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제 제32호 부표4)
장부의작성·비치의무 불이행등명세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제 제32호 부표5)
보유부동산명세서(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제 제32호 부표6)

제 4 장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공개

Q^{uestion}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가 세법 상 각종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증여세가 추징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밖의 다른 불이익이 존재하나요?

국세청장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단체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제1항 및 제5항).

Q^{uestion}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어떠한 단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0항).

1.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Q^{uestion}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 공개 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이 공개되는 것인가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되는 사항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Q^{uestion}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하면 무조건 단체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인가요?

국세청장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 한 후 공개대상자를 결정합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제4항).

또한, 단체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모 금 단 체
기 부 금
매 뉴 얼

부 록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이사 등 선임명세서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2.28.>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1. 인적사항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연도	
⑤ 소재지		⑥ 전자우편주소	
		⑦ 전화번호	
⑧ 공익사업 유형	1.교육 2.학술·강학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⑨ 외부세무확인대상	1.여 2.부	⑩ 수익사업 운영	1.여 2.부
⑪ 회계감사이행여부	1.여 2.부	⑫ 성실공익법인여부	1.여 2.부

2. 자산보유현황

⑬ 총자산가액 (⑭+⑮+⑯+⑰+⑱)	⑲ 토지	⑳ 건물	㉑ 주식·출자 지분 등	㉒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㉓ 기타
------------------------	------	------	-----------------	-------------------	------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구분	⑲ 합계 (⑳+㉑+㉒+㉓)	수입사업							㉔ 기타 수입 사업	㉕ 고유 목적 사업
		금융				부동산				
		㉖ 소계	㉗ 이자	㉘ 배당	㉙ 기타	㉚ 소계	㉛ 임대	㉜ 매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 2.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 3.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 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 5.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 6.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서식) 7.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서식) 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 명세서,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장부의 작성·비치의 무 불이행명세서, 보유부동산명세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로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2.28.>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구분	③출연(운용 소득 발생, 매각) 사업연도	④재산종류		⑤ 용도	기간		⑧금액	⑨ 해당 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	사용금액			⑬ 기준미달 사용금액 (⑨-⑫)	
		분류 코드	과목명		⑥ 사용 시작일	⑦ 사용 종료일			⑩ 직전 연도 까지의 사용금액	⑪ 해당 연도 사용금액	⑫ 계 (⑩+⑪)		
출연 재산													
운용 소득													
매각 대금													

364mm×25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12.2.28.>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③ 사업연도 구분	④ 출연일	⑤출연자	출 연 재 산				⑪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사용금액	해당 사업연도	
			⑦ 종류		⑧ 소재지	⑨ 수량 (면적)		⑩ 가액	⑫ 사용 금액
		⑥ 주민등록 번호 등	코드	과목명					
⑭ 해당 사업연도		소액계							
합 계									
⑮ 직전 사업연도									
합 계									
⑯ 직전전 사업연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16.3.21.>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	--	-------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구분	⑦ 해당 사업연도	⑧ 1년 전 사업연도	⑨ 2년 전 사업연도	⑩ 3년 전 사업연도	⑪ 4년 전 사업연도	⑫ 5년간의 평균 (⑦~⑪의 평균)
③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④사용기준액 () (③× $\frac{\quad}{100}$)						
⑤1년내 사용실적						
⑥과부족액 (⑤-④)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⑬ 수의사업 등의 소득금액	가산액			차감액			
	⑭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⑮ 기타	⑯ 소계 (⑬+⑮)	⑰ 출연재산 양도차익	⑱ 법인세 등	⑲ 이월결손금	⑳ 소계 (⑰+⑱+⑲)
㉑ 차가감소득 (⑬+⑰-⑲)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㉒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㉑+㉒)		
	㉓ 기준미달사용액	㉔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㉕ 소계 (㉓-㉔)	㉖ 소계 (㉑-㉔)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회복지법인

기 부 금

업무 매뉴얼

부 록 2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6.3.2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정기공시 [] 해산공시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공익사업유형		⑩ 설립근거법	
⑪ 주무관청		⑫ 기부금(단체) 유형	[]법정 []지정 []기타
⑬ 설립주체	[]개인+가족 []기업 []기업+개인 []종교단체 []지역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⑭ 단체유형	[]재단법인 []사단법인 []인가단체 []공공기관 []기타		
⑮ 이사 수	명	⑯ 고용직원 수	명
		⑰ 자원봉사자 수	명

2. 자산보유현황

(단위: 원)

구분	⑮ 총자산가액	⑯ 토지	⑰ 건물	⑱ 주식 및 출자지분	⑲ 금융자산	㉑ 기타 자산
② 총계 (②=①+③)						
⑬ 고유목적사업						
⑭ 수익사업						

3.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

(단위: 원)

구분	⑳ 소득금액	㉒ 수입금액				㉓ 필요경비		
		㉔ 소계	㉕ 기부금	㉖ 보조금	㉗ 기타 사업수입	㉘ 소계	㉙ 목적 사업비	㉚ 일반관리 및 모금비
② 총계 (②=①+③)								
⑬ 고유목적사업								
⑭ 수익사업								

4.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㉛ 복식부기 여부	[]여 []부	㉜ 회계감사 여부	[]여 []부
㉝ 세무확인 여부	[]여 []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4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제출서류	1.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2.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4.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처분 명세서 5.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6.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① 고유목적사업 현황

② 사업내용

[]예술, 문화, 스포츠 []학교 경영 및 교육연구 []학자금, 장학금지원 []병원경영, 의료, 보건
 []사회복지 []환경, 동식물보존, 유물 []지역개발, 주거/자원봉사 []법률, 정치 []모금 및 배분
 []국제개발, 해외원조 []경제 산업, 고용 []기타

③ 사업대상

[]모두 해당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다문화) []가족, 여성 []일반대중 []기타

④ 국내 주요 사업지역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세종 []제주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전세계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해당 없음

⑥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지역, 수혜인원, 사업내용, 사업비)을 적습니다.

1	사업명		사업비	원
사업 실적				
2	사업명		사업비	원
사업 실적				
3	사업명		사업비	원
사업 실적				
4	그 외 사업	개	사업비	원
합 계	총 목적사업	개	사업비 합계	원

작성 방법

5.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 고유목적사업 현황"란은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을 적습니다.

나. ②부터 ⑤까지 []에는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를 합니다.

다. ⑥란은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지역, 수혜인원, 사업내용, 사업비)을 적습니다. 다만,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비가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을 적습니다.

라. ⑥란의 사업비 합계는 6쪽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의 당기 목적사업비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4쪽)

6.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1. 기부금		
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모금액		
② 개인기부금		
③ 행사모금액		
④ 기업, 단체기부금		
⑤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⑥ 기타 기부금		
⑦ 기부물품		
2. 보조금		
3.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① 회원회비 수입		
② 등록금 수입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총 합계 (1+2+3)		

7. 수익사업 수입금액(필요경비) 세부현황

(단위: 원)

구분	① 합계	수익사업							⑨ 기타 수익 사업
		금 용				부 등 산			
		② 소계	③ 이자	④ 배당	⑤ 기타	⑥ 소계	⑦ 임대	⑧ 매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제6쪽)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기			전기		
	계	목적사업비	일반관리 및 모금비	계	목적사업비	일반관리 및 모금비
① 목적사업 지출금						
1) 국 내						
2) 국 외						
② 회관관리비						
③ 급여						
1) 상용근로자						
2) 일용근로자						
④ 퇴직급여						
⑤ 사회보험부담금						
⑥ 복리후생비						
⑦ 업무추진비						
⑧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모집비용						
⑨ 기타 모금비용						
⑩ 회의비						
⑪ 여비교통비						
⑫ 통신비						
⑬ 수도광열비						
⑭ 임차료						
⑮ 세금과 공과금						
⑯ 수선비						
⑰ 보험료						
⑱ 차량유지비						
⑲ 교육훈련비						
⑳ 도서 등 구입비 및 인쇄비						
㉑ 사무용품비						
㉒ 지급수수료(회계, 법률 자문 등)						
㉓ 외주비						
㉔ 감가상각비						
㉕ 무형자산상각비						
㉖ 광고선전비						
㉗ 이자비용						
㉘ 기타 비용						
1)						
2)						
3)						
4)						
5)						
총 합계 (㉑~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개정 2014.3.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원)

① 월별	② 수입	③ 지출	④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2. 기부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단위: 원)

⑤ 지출월	⑥ 지급목적	⑦ 지급건수	⑧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⑨ 금액
⑩ 사업연도 (과세기간)	⑪ 지급목적	⑫ 수혜인원	⑬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⑭ 금액
합 계				

3. 기부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단위: 원)

⑮ 지출월	⑯ 국가명	⑰ 지급목적	⑱ 지급건수	⑲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⑳ 금액
㉑ 사업연도 (과세기간)	㉒ 국가명	㉓ 지급목적	㉔ 수혜인원	㉕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㉖ 금액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개정 2012.2.28.)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단위 : 주식수, 원)

주식명	보유 주식수	주식가액 (장부가액)	보유경위			배당현황	비고
			출연	유상 취득	기타		
합 계							

2. 보유주식 변동사항

(단위 : 주식수, 원)

일자	변동 사유	주식명	주식수	주식가액 (장부가액)	관 계 (주식발행법인, 출연자와의 관계)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단위 : 주식수, %)

주식명	주식수	보유비율			비고
		총발행주식	보유주식수	보유 비율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株式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주식수, %, 원)

자산총액	株式총액	비율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개정 2012.2.28.>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1. 출연자(기부자)

(단위 : 원)

(1) 설립시 출연자(기부자)

성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이사장과의 관계	비고

(2)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기부자)

성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이사장과의 관계	비고

2.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성명	상임여부	출연자와의 관계	비고

작성 방법

1. 출연자(기부자)

- 이 서식의 작성대상은 설립시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기부)한 출연자이며,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장부가액 기준)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
- 출연재산 종류에는 1. 현금 2. 금융자산 3. 토지 4. 건물(건축물 포함) 5. 주식 등 6. 기타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2.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 이사 등 주요 구성원은 이사(이사장 포함), 감사, 임원, 그 밖에 해당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회복지법인

기 부 금

업무 매뉴얼

부 록 3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보유부동산 명세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2012.2.2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⑥ 사업목적	
⑦ 사업연도		⑧ 설립근거법	

1. 자산보유현황

구분	금액	
⑨ 총 자산가액		
자산 종류별	⑩ 토지	
	⑪ 건물	
	⑫ 예·적금등 금융자산	
	⑬ 주식	
	⑭ 기타	

2. 수입금액 현황

구분	금액	
⑮ 총 수입금액		
수입 원천별	⑯ 금융	
	⑰ 부동산	
	⑱ 기타 수익사업	
	⑲ 고유목적사업	

3. 세무확인결과

⑳ 위반금액	㉑ 외부전문가 종합의견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㉒ 구분	㉓ 성명	㉔ 사업자등록번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공익법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집계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1) 2.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 3. 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3) 4.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부적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4) 5. 정부의 작성·비치 의무불이행 등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 6. 보유부동산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 7.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치계산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부표 1] <신설 2012.2.2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사업연도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구분	세 무 확 인 항 목		적정여부 ㉑	위반금액 ㉒
	① 합 계			
출연재산 보고 등	②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③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및 진도내역서 [별지 제24호서식]			
	④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2서식]			
	⑤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3서식]			
	⑥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4서식]			
	⑦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별지 제26호서식]			
	⑧이사 등 선임명세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⑨특정기업을 위한 광고 등 명세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⑩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		
⑪수혜자 선정 부정적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3]				
⑫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내역 부정적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4]				
⑬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				
⑭ 보유부동산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가. ㉑란은 공익법인 제출서류의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 등 세무확인 결과를 적습니다.
 나. ㉒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출연재산의 가액 또는 운용소득금액 및 지출비용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 <신설 2012.2.28.>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쪽)

사업연도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내역

구 ① 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금액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장부 등	비 ④ 고
공익목적 사 업			
수 익 사 업 명			

2. 출연재산 명세 보고 등 불이행 내역

구 ⑤ 분	⑥ 제 출 여 부	⑦ 미제출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⑧ 누락 또는 오류 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별지 제24호서식]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2서식]			
재산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3서식]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4서식]			
주식(출자지분)보유 명세서 [별지 제26호서식]			
이사 등 선임명세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 <신설 2012.2.28.>

보유부동산명세서

사업연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재산 종류	출연일자 (취득일자)	소 재 지	수 량 (면적)	장부가액	재산 종류	출연일자 (취득일자)	소 재 지	수 량 (면적)	장부가액										
					합 계														

364mm×257mm[백상지 80g/m²또는 중질지 80g/m²]

감 수

박 재 형

약 력

- 한국공인회계사
- 前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근무
- 現 한서세무회계 대표

주요 업무 경력

- 기업합병·분할 업무 및 구조조정자문 업무(LG데이콤, 노비타, 신송그룹 등 다수)
- 조세불복 업무(요진산업, 미디어플렉스 등 다수)
- 세무진단 업무(한국석유공업, 지엔텔, 제이엠아이 등 다수)
- 세무자문 업무(LG데이콤, 대한상공회의소, 에너지관리공단, 현대차정몽구재단, · 과학기술인 공제회, 삼성꿈장학재단 등 다수)
- 세무신고대행 및 세무자문 업무(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삼성꿈 장학재단, 무역보험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등 다수)
- 삼일미래재단 비영리 강의
- 국세청강의
- 감사원강의
- 대한상공회의소 비영리세무강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계·세무 강의
- 삼일아카데미 비영리법인의 세무와 회계 강의
- 교육청 산하 재단관계자 연수 강의